



제조물 책임법 조문 해설

Explan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법이다. 따라서 결함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사전 예방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피해구제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외

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자 중시의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



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설)

1. 제조물의 정의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 제2조 1호).

제조물 책임은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분화가 진행되었고 소비자가 대량

으로 생산된 공업제품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을 제조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범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포함된다.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산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세정제, 장식품, 용기 스포츠용품, 자동차, 자전거, 유아용품, 장애인용 제품, 의료기기, 페인트, 가구, 방충제, 표백제, 건전지 등 모든 생활용품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농산물)은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2. 결함의 정의

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을 예시하였다

(법 제2조 2호).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의미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상품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가 또는 국제적인 안전수준은 어떠한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성을 보다 중시할 때에는 결함의 판단에 안전성 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2) 결함 유형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에 있어 가능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조결함은 공정상의 이물질 혼입, 설계와 달리 제조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예) 제품에 이물질 혼입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결함에서는 상품내부설계, 상품형상설계, 상품포장설계, 색상, 도안, 표시, 경고 등을 포함한다. 예) 유아용 장난감, 녹즙기 사건, 유모차접힘 사건

(3)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예) 텔레비전 고전압 사용표시 결함

3. 제조업자의 정의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리고 제조물에 성명·상호·표·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이다(법 제2조 3호).

이는 책임주체를 정한 조항이고 이 조항의 해석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먼저 제조물책임을 제조자책임으로 보아 결함상품을 제조한 제조자에게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다만 오늘의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상품생산 및 유통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함상품의 제조자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면 제대로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함상품으로 인해 피해의 용이한 구제를 위하여 배상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첫째,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상품판매의 총책임을 지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어



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외관법리를 적용하여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를 부착함으로써 자기를 제조자로 오인하게 한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공급자도 일차적인 책임주체인 제조업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조 2항).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설)

1. 책임주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 유통업자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 손해의 범위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

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가 나타나지 않는 재산적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손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는 치료비나 사망 상해와 관련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부분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위자료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는 것 등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컨대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두 가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이외에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징벌적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동경도 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 판결을 한 바 있다.

2) 물적 손해

물적손해는 결함상품 자체의 손해와 결함상품 이외의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다음 세가지 유형의 손해가 발생한다. 상품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자체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상품 자체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확대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다.

첫째, 결함상품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는 상품에 결함이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 손해이고, 단순한 품질상의 하자과 구별하는 것이 실제 곤란하다. 예를 들어 전기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이 붙었으나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대물청구 또는 해당 상품의 수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손해가 그 상품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굳이 제조물책임법리를 적용하여 제조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그 손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둘째, 손해가 결함상품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기장판의 화재로 전기장판도 소실되고 다른 가구도 소실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확대된 손해부분(다른 가구 소실)은 제조물책임법리로 추궁하고 결함상품 자체의 손해(전기장판소실)는 계약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법리로 추궁한다면, 피해자가 양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함상품 자체의 손해도 확대손해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상품 자체의 손해는 없으나 다른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로, 예를 들어 녹즙기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마모되었으나 녹즙기 자체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와, 전기제품에 감전되었으나 전기제품 자체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리가 적용되어 배상 의무자는 책임을 지게된다.

3) 경제적 손해

경제적 손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하

지 않으나 상품의 결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라고 한다. 결함 상품에 의하여 인신손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그 상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예상이익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든가, 그 상품 자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의 손해이다. 즉 결함있는 상품의 수리 교체비용, 결함에 의한 가격의 감소, 상품에 결함이 없었다면 획득할 수 있는 이익 등의 회복을 제조물책임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해는 개인 소비자보다도 기업에게 크게 의미가 있고 이를 인정하면 손해의 범위는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도 입법 당시 국민생활심의회의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손해를 제조물책임의 손해 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 부분은 판례에 의하여 해석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료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예설)

이러한 면책 사유는 제조업자가 책임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결함의 원인을 제조업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위험항변은 유통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에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에 관하여는 개개 제조업자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제조자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상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사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설)

이 조항은 오늘의 제품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수일 수가 있고 각각의 책임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이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설)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래약관에 면책조항을 둔다거나 사전에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제한 특약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이다. 면책특약이나 책임제한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 소비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은 일반민사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새로운 책임이다. 여기에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위불균형을 고려하여 계약자유라는 근대법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과 상인간의 당사거래에서는 소비자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교섭력을 대등하다고 보아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은 이를 인정하였다. 당사거래의 자율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이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상품은 구식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되고 과학 기술의 수준은 계속하여 발전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품개발 당시의 기록,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 등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

이로써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책임추궁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

어 합리적인 제품개발 계획이나 경영 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되는 등 제조자에게 부담이 적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이 조항에 따라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특별법이나 민법을 근거로 책임 추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설)

이 법은 사업자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동안 결함 제조물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불법 행위 등 다른 책임체계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로부터 적용한다.

(해설)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기업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 ☞